

##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

### 가. 6급 이하

직 렬	직 류	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	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
행정	일반행정	-	번호사 변리사
공업	일반기계	기술사 : 기계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차량, 건설기계, 용접, 금형, 산업기계설비, 기계안전, 공장관리, 품질관리	
		기능장 : 기계가공, 보일러, 철도차량정비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정비, 용접, 금형제작, 판금제관, 배관	
		기사 : 일반기계, 메카트로닉스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기계설계, 용접, 프레스금형설계, 사출금형설계, 농업기계, 에너지관리, 산업안전, 품질경영, 승강기	
		산업기사 : 컴퓨터응용가공, 기계조립, 메카트로닉스, 생산자동화, 기계설계, 공조냉동기계, 보일러, 철도차량, 철도차량정비, 철도차량정비, 철도운송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치공구설계, 정밀측정, 용접, 프레스금형, 사출금형, 기계정비, 판금·제관, 농업기계, 배관, 에너지관리, 산업안전, 품질경영, 영사, 승강기	
		기능사 : 컴퓨터응용선반, 연삭, 컴퓨터응용밀링, 기계조립, 생산자동화, 전산응용기계제도, 공유압, 공조냉동기계, 보일러, 철도차량정비, 자동차정비, 자동차차체수리, 자동차검사, 건설기계기관정비, 양화장치운전, 궤도장비정비, 정밀측정, 용접, 특수용접, 금형, 기계정비, 판금·제관, 농기계정비, 농기계운전, 배관, 동력기계정비, 영사, 승강기	
시설	일반토목	기술사 : 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 및 공항, 철도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어업토목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지질 및 지반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	
		기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보선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응용지질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	
		산업기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보선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조경, 지적, 건설안전, 교통	
		기능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보선, 석공, 전산응용토목제도, 측량	
시설	건축	기술사 : 건축전기설비,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설안전, 소방	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: 건축사
		기능장 : 건축일반시공, 건축목재시공	
		기사 : 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	
		산업기사 :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건축, 건축목공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	

비고 :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.



## □□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

장애유형		편의 지원 항목	제출 서류
시각 장애	약시자 (양안 교정시력 0.04이상 0.3미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확대문제지</li> <li>■ 확대답안지</li> <li>■ 시험시간 연장(1.5배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</li> <li>■ 의사소견서 원본 1부</li> </ul>
뇌병변 장애 및 지체 장애	중증 뇌병변(1~3급) 및 중증 상지지체(1~3급)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확대문제지</li> <li>■ 확대답안지</li> <li>■ 대필</li> <li>■ 시험시간 연장(1.5배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</li> </ul>
	경증 뇌병변(4~6급)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확대문제지</li> <li>■ 확대답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시험시간 연장(1.5배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</li> <li>■ 의사진단서 원본 1부</li> </ul>
	경증 상지지체(4~6급)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확대문제지</li> <li>■ 확대답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</li> </ul>
	하지 지체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별도 시험실 배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</li> </ul>
청각 장애	농아인(2~4급) 난청인(5~6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화통역사 배치(사전 신청)</li> <li>■ 보청기 등 지참 허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</li> </ul>

## □□ 유의사항

-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해당 여부,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참조한 후,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 
(진단서 제출시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)
- 의사진단서(소견서)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합니다.
-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시험시간 연장, 대필을 신청한 자에 해당되며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편의제공 신청서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응진군청 안전행정과(032-899-21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- ✓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내용이 다를 경우
- ✓ 증빙서류(의사소견서 및 진단서)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
- ✓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

반드시 계획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

■ 응시번호 :
■ 성명 :
■ 장애등급 :

■ 신청사유 :	<input type="checkbox"/> 시각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체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뇌병변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청각장애인
■ 신청항목 :	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시간연장(1.5배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문제지(118%, 14point / 150%, 18point / 200%, 24point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답안지(A3규격 표기형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사항      ※ 복수신청 가능
■ 연락처 :	휴대폰: _____ (자택 : _____ )
※ 간략히 기재      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기재 (워드 또는 자필)	

본인은 장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.

※ 첨부 :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/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(국가유공자확인원)

2014년    월    일

작성자 : \_\_\_\_\_ (서명)

수험생과의 관계 : \_\_\_\_\_

## 용진군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

※ 의사소견서 원본(해당자에 한함.) 1부,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, 본 신청서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세요(7.13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하여 편의 제공).

※ 주소 : (400-103)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용진군 안전행정과 행정팀 인사담당자

**참고**

**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**

**1.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**

※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c.or.kr)의 병의원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
**2. 발급일자 :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**

**3. 의사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**

- ① 장애유형 및 등급(정도)에 대한 구체적 진술 (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)
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(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)
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(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)
 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점자문제지,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
 - “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”

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(소견서)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의함

**<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>**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 시
시 각 장애	3급2호 4급2호	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,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	6급	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,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	기 타	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뇌병변 장애	경 증	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,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